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삼문 시그니처 웰가" 견본주택 내 분양상담 전화(1566-8873) 및 공식홈페이지(http://삼문시그니처웰가.kr)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I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시행수탁자 겸 매도인)	시행위탁사	시공사
상호	대한토지신탁(주)	데케이디파트너스(주)	흥한주택종합건설(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96길 6, 9층 907호 (삼성동, LG트윈텔)	경남 진주시 신안로94, 105호 (신안동, 흥한스위트)
등록번호	110111-1492513	110111-8345137	161511-0006770

II 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예비당첨자 일부)	계약체결
일정	2024년 03월 04일(월)	2024년 03월 05일(화)	2024년 03월 06일(수)	2024년 03월 12일(화)	2024년 03월 18일(월) ~ 2024년 03월 22일(금)	2024년 03월 25일(월) ~ 2024년 03월 27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사 견본주택 방문 (10:00 ~ 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청약Home)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 일명시 삼문동 715-12번지 ※ 문 의 : 1566-8873 ※ 서류제출일 및 계약일정에 대한 운영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방문예약 및 일정변경 시 추후 통보예정임 		

III 공급내역 및 공급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밀양시 건축과-7754호(2024.02.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620-1번지 외 9필지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0층 4개동 총 232세대 (특별공급 117세대(기관추천 23세대, 다자녀가구 23세대, 신혼부부 43세대, 노부모부양 7세대, 생애최초 2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책형 (전용면적)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민영주택	2024000063	01, 02	084, 9772A, 9949B	84A, 84B	84, 84	84, 9772, 9949	29, 1988, 1025	114, 1760, 10, 974	66, 0735, 66, 0872	180, 2495, 180, 1846	45, 5071, 45, 5166	218, 14	22, 1	22, 1	40, 3	7, 0	20, 1	111, 6	107, 8	14, 1

(단위 : m², 세대)

IV 공급금액

타입	공급세대수	동구분 (리인)	층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입주자정일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4.07.29	2024.12.27	2025.04.28	2025.08.28	2025.12.29	2026.04.28									
84A	199	101동 3,4호 102동 1,2,3,4호 103동 1,2,3,4호 104동 1,2,3,4호	2층	13	49,907,520	433,692,480	483,600,000	10,000,000	38,360,000	48,360,000	48,360,000	48,360,000	48,360,000	48,360,000	48,360,000	48,360,000	48,360,000	145,080,000						
				13	50,155,200	435,844,800	486,000,000	10,000,000	3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45,800,000						
				13	50,413,200	438,086,800	488,500,000	10,000,000	38,850,000	48,850,000	48,850,000	48,850,000	48,850,000	48,850,000	48,850,000	48,850,000	48,850,000	146,550,000						
			5~9층	65	50,918,880	442,481,120	493,400,000	10,000,000	39,340,000	49,340,000	49,340,000	49,340,000	49,340,000	49,340,000	49,340,000	49,340,000	49,340,000	49,340,000	148,020,000					
				64	51,176,880	444,723,120	495,900,000	10,000,000	39,590,000	49,590,000	49,590,000	49,590,000	49,590,000	49,590,000	49,590,000	49,590,000	49,590,000	148,770,000						
				31	51,434,880	446,965,120	498,400,000	10,000,000	39,840,000	49,840,000	49,840,000	49,840,000	49,840,000	49,840,000	49,840,000	49,840,000	49,840,000	149,520,000						
			16~20층	2층	1	50,918,880	442,481,120	493,400,000	10,000,000	39,340,000	49,340,000	49,340,000	49,340,000	49,340,000	49,340,000	49,340,000	49,340,000	49,340,000	148,020,000					
				3층	1	51,176,880	444,723,120	495,900,000	10,000,000	39,590,000	49,590,000	49,590,000	49,590,000	49,590,000	49,590,000	49,590,000	49,590,000	148,770,000						
				4층	1	51,434,880	446,965,120	498,400,000	10,000,000	39,840,000	49,840,000	49,840,000	49,840,000	49,840,000	49,840,000	49,840,000	49,840,000	149,520,000						
			19	101동 1호	5~9층	5	52,074,720	452,525,280	504,600,000	10,000,000	40,460,000	50,460,000	50,460,000	50,460,000	50,460,000	50,460,000	50,460,000	50,460,000	151,380,000					
					10~15층	6	52,332,720	454,767,280	507,100,000	10,000,000	40,710,000	50,710,000	50,710,000	50,710,000	50,710,000	50,710,000	50,710,000	50,710,000	152,130,000					
					16~20층	5	52,580,400	456,919,600	509,500,000	10,000,000	40,950,000	50,950,000	50,950,000	50,950,000	50,950,000	50,950,000	50,950,000	50,950,000	152,850,000					
84B	14	101동 2호	2층	1	50,660,880	440,239,120	490,900,000	10,000,000	39,090,000	49,090,000	49,090,000	49,090,000	49,090,000	49,090,000	49,090,000	49,090,000	147,270,000							
			3층	1	50,980,800	443,019,200	494,000,000	10,000,000	3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148,200,000								
			4층	1	51,228,480	445,171,520	496,400,000	10,000,000	39,640,000	49,640,000	49,640,000	49,640,000	49,640,000	49,640,000	49,640,000	148,920,000								
			5~9층	5	51,868,320	450,731,680	502,600,000	10,000,000	40,260,000	50,260,000	50,260,000	50,260,000	50,260,000	50,260,000	50,260,000	150,780,000								
			10~15층	6	52,126,320	452,973,680	505,100,000	10,000,000	40,510,000	50,510,000	50,510,000	50,510,000	50,510,000	50,510,000	50,510,000	151,530,000								

(단위 : 세대, 원)

V 공급대금 납부계획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획번호	예금주명
분양대금 납부계획	신용협동조합	131-022-303535	대한토지신탁(주)

VI 신청자격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청약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잔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잔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잔액이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에만 청약 가능함이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일명시 및 경상남도)</th> <th>기타 광역시 (울산광역시)</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6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4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700만원</td> <td>1,5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500만원</td> <td>1,000만원</td> <td>1,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일명시 및 경상남도)	기타 광역시 (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5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일명시 및 경상남도)	기타 광역시 (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5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구분	내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인터넷 접수로 변경되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수가 가능하나 14:00까지 접수해야 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셔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접수 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지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상호 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 마감 이후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신청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청약신청 당시 청약신청의 기재 사항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등·호수를 변경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사용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등·호수 추첨은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등·호수를 결정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됩니다.

■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유의사항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등·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등·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행렬 정렬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행렬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행렬 전체 신청자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나머지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망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최초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등·호수를 공개한 후 등·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등·호수를 배정하며(등·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도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 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에는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등·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등·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정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정제(가정집수가 높은 순)로 입주를 선정하고, 가정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일자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를 재신청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정제로 나머지 60%는 가정제로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입주자 선정 시 1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일자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정 시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행렬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구분 없이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만큼 지역구분 없이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를 선정하고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등·호수를 공개한 후 등·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등·호수를 배정합니다. (등·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입주자제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및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더 유망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주택 세대주로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합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 방법으로 정정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등·호수를 변경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사용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망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VII 인터넷